

# 飛山粉塵發生源 施設管理基準

1986. 4.

〈環境廳〉

## 1. 목 적

이 기준은 비산분진을 배출하거나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산분진 배출공정에 대하여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과 조치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비산분진”이라 함은 물체의 분쇄, 선별, 혼합 기타 기계적처리 또는 분체상 물질의 이송, 하화,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 등에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비산되는 분진을 말한다.
- “비산분진 발생원”이라 함은 비산분진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산분진 배출공정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장”이라 함은 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등을 시공하거나 시행하는 곳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것을 말한다.
- “저장(시설)”이라 함은 분체상의 원료, 부원료, 연료 및 제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거나 또는 구조물내에 적치한 것을 말한다.
- “분체상 물질”이라 함은 토사, 석탄, 시멘트 및 기타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 “상적”이라 함은 운반을 목적으로 분체상 물질을 운반시설, 기계기구 및 기타 장치 등에 이적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하화”라 함은 수송되어온 분체상 물질을 수송장비, 기계, 기구로부터 기계적방법 또는 인력 등을 이용하여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 “수송”이라 함은 분체상 물질을 차량 등의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한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이송”이라 함은 분체상 물질을 벨트콘베아, 바스켓콘베아, 수불시설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내의 일정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방진력, 방진망, 방진막 또는 방진덮개”라 함은 분체상 물질의 저장, 이송, 상적 및 하화, 수송 또는 바람 등 자연의 힘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거나 또는 일정한 구조물의 개방부위 (창문 또는 문등)를 통하여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망, 장막 또는 덮개를 말한다.

##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산분진 배출공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① 분출배출시설

구 분	배 출 시 설	규 모	대 상 시 설
1. 시멘트 석회, 프 라스터 및 시멘트판 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시설</li> <li>• 선별시설</li> <li>• 분쇄시설</li> <li>• 저장시설</li> <li>• 소성시설 및 용융시설 (또는 건조시설, 반응 시설, 냉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력합계 30마력이상</li> <li>• 동력합계 10마력이상</li> <li>• 벨트폭 30cm이상 또는 단위 바퀴의 내용적이 <math>0.01\text{m}^2</math> 이 상</li> <li>• 저장용량 100톤이상</li> <li>• 치장능력 <math>300\text{m}^3</math> 이상</li> <li>• 치장면적 <math>100\text{m}^2</math> 이상</li> <li>• 화학자면적 <math>0.5\text{m}^2</math> 이상</li> <li>• 발열량 10만 kcal/시간이상</li> <li>• 처리능력 0.5톤/시간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레미콘 제조시설</li> <li>2. 시멘트 제조시설</li> <li>3. 석회 제조시설</li> <li>4. 프라스터 제조시설</li> <li>5. 시멘트제품 관련제 조시설</li> </ul>
2. 비금속 물질 제 조 및 가 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시설</li> <li>• 산처리시설</li> <li>• 선별시설, 혼합시설, 이송시설, 저장시설, 분쇄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량 10만 kcal/시간이상</li> <li>• 표면적합계 <math>1.5\text{m}^2</math> 이상</li> <li>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규모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li> <li>2. 도기, 자기 및 도기 제조시설</li> <li>3. 내화용 점토제품 제조시설</li> <li>4. 활성탄 제조시설</li> <li>5. 석탄제품제조시설</li> <li>6. 골재 채취시설</li> <li>7. 기타 분체상 비금 속광물을 취급하는 시설</li> </ul>
3. 제 1차 금속제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선로</li> <li>• 주형 및 주물사 처리 시설</li> <li>• 탈사시설 (숏트 브라스 트 포함)</li> <li>• 혼합시설, 선별시설, 이송시설, 저장시설, 분쇄시설, 산처리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리능력 0.2톤/시 또는 1회 0.2톤이상</li> <li>• 발열량 10만 kcal/시간이상</li> <li>• 전기시설용량 <math>250\text{kW}</math>이상</li> <li>• 주물사처리능력 <math>1\text{m}^3</math>/일이상 또는 처리능력 1톤/일이상</li> <li>• 동력 10마력이상, 분사능력 <math>100\text{kg}/\text{분}</math> 이상</li> <li>• 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규모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물시설</li> <li>2. 철강 제품제조시설</li> </ul>
4 . 비료 및	• 용해시설, 소성시설,	• 처리능력 $50\text{kg}/\text{시간}$ 또는 1	1. 비료제조시설

사료제조 시설	전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 50kg 이상</li> <li>• 화학자면적 0.5m<sup>2</sup> 이상</li> <li>• 전기시설용량 100kw이상</li> <li>• 발열량 10만 kcal/시간이상</li> <li>• 처리능력 50kg/시간 또는 1회 50kg 이상</li> <li>• 동력 10마력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규모와 동일</li> </ul>	2. 사료제조시설 3. 곡분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시설, 반응시설, 흡수시설, 정제시설, 농축시설, 분리시설, 혼합시설, 중화시설, 화학시설, 조립시설, 냉각시설</li> <li>• 분쇄시설, 선별시설, 저장시설</li> </ul>		

## ② 공사장

구 분	규 모	비 고
1. 건축공사	• 연면적 300m <sup>2</sup> 이상	• 건물, 지하상가, 기타 건축물
2. 굴착공사	• 총연장 100m이상 • 굴착토사량 100m <sup>3</sup> 이상	• 상·하수도, 가스, 전신전화, 지하매설물, 기타 도로굴착
3.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300m <sup>3</sup> 이상 • 공사 면적 합계 300m <sup>2</sup> 이상	• 도로, 교량, 지하도, 지하철, 지하구조물, 호안공사
4. 조경공사	• 면적 합계 300m <sup>2</sup> 이상 • 총연장 100m이상 • 연면적 300m <sup>2</sup> 이상	• 공원, 정원, 도로  • 건물, 교량, 고가도로, 육교, 지하구조물 기타 건축물
6. 기타공사	• 1~5 이외의 공사로서 그 규모가 당해 각호의 공사 규모이상 또는 두 가지이상의 복합공사로서 그 규모의 합계가 당해 각호의 규모이상	

## ③ 비 산물진 배출공정 분

- ㄱ. 저장 ㄴ. 상적 ㄷ. 하화  
 ㄹ. 수송 ㅁ. 이송 ㅂ. 선별  
 ㅅ. 혼합 օ. 분쇄 ㅈ. 탈사  
 ㅊ. 제조장 ㅋ. 작업장 ㅌ. 공사장

## 4. 비 산분진 발생원 시설 관리기준

“3. 적용범위”에서 정한 배출시설 및 공사장의 비 산분진 배출공정에 적용할 시설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5. 적용지역구분

이 기준을 적용할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대상지역	비고
1. 갑지역	가. 환경보전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나. 서울특별시 다.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라. 경기도의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정부시, 부천시, 과천시	직할시
2. 을지역	가. 갑지역을 제외한 도청소재지 및 인구 10만이상의 시청소재지역	
3. 병지역	가. 갑지역 및 을지역을 제외한 지역	

## 6. 관리자의 의무

- 1)이 기준에서 정한 적용대상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4.비산분진 발생원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 2)관리자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내에 비산분진 발생원에 대한 방지시설 운영관리내용 또는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지침을 위한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3)관리자는 비산분진 발생원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분진 발생원을 출

입하는 수송차량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 실시여부, 적재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4)기존시설로서 이 기준에서 정한 방지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 및 대안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이 기준에서 정한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서식 1에 의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 서식에 의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비산분진 발생원 시설관리기준

〈별표 1〉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비고
1. 저장	1)비산분진 발생원으로서 분체상 물질을 저장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저장</li> <li>• 비금속광물저장</li> </ul>

<p>(1) “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저장시설 : 사일로, 상옥시설 또는 지하저장 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밀폐용기저장)</li> <li>② 작업시설 : 저장물질의 상적, 하화, 이송을 위한 자동 또는 반자동의 이송시설을 설치할 것</li> <li>③ 출입문 :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이 자동 또는 반자동 이송시설을 설치할 것</li> <li>④ 집진시설 : 저장시설의 국소배기 부위 등에는 적절한 집진设施을 설치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석저장</li> <li>• 골재저장</li> <li>• 주물사저장</li> <li>• 석탄류저장</li> <li>• 곡분, 사료저장</li> <li>• 비료 및 그 원료의 저장</li> <li>• 기타 분체상 물질의 저장</li> </ul>
<p>(2) “을”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지역의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li> <li>② 저장시설 : 저장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3 이상으로 방진역을 구축하여 저장할 것</li> <li>③ 작업시설 : 저장물질의 상적, 하화 또는 이송을 위한 중장비 시설을 갖출 것</li> <li>④ 출입문 : 운반 및 정리작업을 위한 출입문은 개폐식으로 설치할 것</li> <li>⑤ 방지시설 : 저장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1½ 이상으로 방진막이나 방진망을 설치하거나 저장물질 표면에 표면경화제 살포 또는 저장물질의 표면을 덮개로 완전히 덮을 것</li> </ul>	
<p>(3) “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을”지역의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li> <li>② 저장시설 : 일정한 저장장소를 설정하고 저장물질이 작업장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1m 이상의 방진벽 또는 방진시설 등 (가마니 또는 마대 등을 이용하여 쌓아 올림 등)을 설치할 것</li> <li>③ 작업시설 : 저장물질이송을 위한 중장비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운영할 것</li> <li>④ 출입문 : 저장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간이 개폐식으로 설치할 것</li> <li>⑤ 방지시설 : “을”지역의 방지시설 기준에 적합하게하거나 또는 저장물질의 함수율을 7 ~</li> </ul>	

	<p>10%로 유지할 수 있는 고정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10kg/cm<sup>2</sup> 이 상을 설치할 것.</p> <p>2) 저장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는 저장장으로부터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2. 상적 및 하화	<p>1) 분체상 물질을 상적 또는 하화할 때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옥시설 또는 저하 저장내에서만 상적 및 하화할 것.</li> <li>②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을 제거할 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li> </ul> <p>(2) “을”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적 및 하화장소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반경 5m이상, 수압 10kg/cm<sup>2</sup> 이상)을 설치 운영할 것.</li> <li>②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 7~10%로 유지할 것.</li> <li>③ 상적 및 하화장소에 방진막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li> </ul> <p>(3) “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을”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비에 의한 작업</li> <li>• 차량에 의한 작업</li> <li>• 선적기에 의한 작업</li> <li>• 이송설비에 의한 작업</li> <li>• 인력에 의한 작업</li> </ul>
3. 수송	<p>1) 분체상 물질을 수송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송중 적재물이 훌림 또는 비산되지 않는 유개특장차에 의하여 수송할 것.</li> <li>② 무개차량일 경우는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 만 적재하고 훌림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를 덮어 운행할 것. 단, 덮개는 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는 색상과 재질의 것을 사용할 것.</li> </ul> <p>(2) “을”지역 및 “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지역의 기준에 준할 것.</li> </ul> <p>2) 분체상 물질의 수송하는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전지역 공통)</p> <p>(1)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일 경우</p>	

- ① 비산분진 발생원으로부터 비포장시설 도로연장이 1km 미만일 때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할 것.
- ② 비포장도로로 연장이 1km 이상에 대하여는 비포장도로 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을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할 것.
- ③ 비포장도로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분진이 주변 농작물 또는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살수를 실시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할 것.
- (2) 도로가 비포장 국도 또는 지방도일 경우
- ① 도로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을 살 수 실시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할 것.
- (3)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하여 수송차량으로 인한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① “갑”지역의 세륜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⑦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5배 이상
  - ⑧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⑨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⑩ 수조수의 청정도 : 수조수의 탁도가 1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청정수를 순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⑪ 탁도가 10도 이상 오염된 수조수는 항상 교환될 수 있도록 장치할 것.
  - ⑫ 수송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 이상 전후 진하여 바퀴 등에 묻은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할 것.
- ② “갑”지역에서는 차체의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살수(분사)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 ⑧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⑨ 살수방법 : 양측에서 동시에 살수가 가능한 자동 또는 반자동 설비일 것

	<p>⑤ 수 압 : 10kg/cm<sup>2</sup>이상일 것</p> <p>⑥ 3분이상 정차하여 차체나 바퀴 등에 묻은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출발할 것</p> <p>⑦ 측면 살수시설에서 살수한 물은 세륜수조 또는 폐수처리장으로 자연유하방식으로 유입 되도록 5도이상의 경사를 둘것.</p> <p>⑧ “을” 및 “병” 지역은 위 ① 및 ②의 세륜시설과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한다.</p> <p>⑨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하지 않고는 운영하여서는 안된다.</p>	
4. 이 송	<p>1) 이송시설을 옥외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p> <p>(1) “갑” 지역</p> <p>① 이송시설의 상·하부와 입구, 출구를 완전 밀폐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할 것.</p> <p>② 이송시설의 입구와 출구 등을 밀폐한 경우에는 국소배기 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p> <p>③ 수불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 방법을 사용하여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p> <p>(2) “을” 및 “병” 지역</p> <p>① “갑” 지역의 기준에 준하여 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트콘베아 이송</li> <li>• 바스켓콘베아 이송</li> <li>• 수불시설 이송</li> </ul>
5. 선별	<p>1) 선별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 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갑” 지역</p> <p>① 선별작업을 상옥시설 또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실시할 것.</p> <p>② 작업장의 국소배기 부위에는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p> <p>(2) “을” 및 “병” 지역</p> <p>① “갑” 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것.</p> <p>② 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선별물질의 수분함량을 7~10%로 유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전체선별</li> <li>• 진동체선별</li> <li>• 인력에 의한 선별</li> </ul>
6. 혼합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7. 분쇄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8. 탈사	“5. 선별”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9. 제조장	<p>1) 제조장내에서 발생되는 비산분진은 제조장외로 비산 배출되지 않도록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조장은 밀폐건물로 하거나 제조장 내부를 부압으로 유지할 것.</li> <li>② 제조장내의 국소배기부위에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li> <li>③ 제조장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할 것.</li> <li>④ 바닥에 분진이 퇴적되지 않도록 진공청소기 살수 인력 등에 의하여 1일 1회이상씩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살수한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적정한 조치 또는 경사를 둘 것.</li> </ul> <p>(2) “을” 및 “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갑”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상용시설 또는 지하시설</li> </ul>
10. 작업장	<p>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1) “갑”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작업장내는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할 것.</li> <li>② 우수, 살수한 물등이 폐수처리장 등으로 유입되도록 배수관망(또는 배수관거)을 설치하거나 또는 바닥면을 5도이상 경사지게 할 것.</li> <li>③ 작업장은 살수시설(자동, 반자동, 수동살수 시설로서 수압이 <math>5\text{kg/cm}^2</math>이상일 것)에 의한 정기적인 청소(우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1회이상 청소할 것)를 실시하여 바닥에 분진의 퇴적을 방지할 것.</li> <li>④ 산업폐기물, 슬럿지, 폐슬래그 등 분체상 물질이나 비산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말 것.</li> <li>⑤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하여 청결하게 유지할 것</li> </ul> <p>(2) “을” 및 “병”지역</p> <p>“갑”지역의 기준에 준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장, 저장장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장내의 작업장소나 차량통행장소</li> </ul>
11. 공사장	1) 이 기준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장의 시공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시	

설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갑”지역

- ① 공사장에는 출입차량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출입구에 다음과 같은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할 것
- ⑦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공사장소가 노폭 20m 이상의 도로변으로부터 10m 이내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 수송의 (3)의 ① 및 ②”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세륜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것.
- ㉡ 세륜, 세차수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하수를 처리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처리수는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12조 별표 7의 폐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것.
- ㉢ 설치장소 부족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륜 및 세차시설,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세륜 및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사장에서 굴착, 철거, 절토, 매립 등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은 즉시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장내에 적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장내에 적치하고자 할 때에는 적치한 토사가 차도와 인도 등 도로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건축, 철거, 굴착공사중에 비산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적정개소에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세륜, 세차수와 살수한 물 및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물 등은 차도와 인도 등에 유수되거나 또는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 ⑥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의 상적파하화시에는 “2. 상적 및 하화”의 시설관리 기준에 준하여 시행할 것.
- ⑦ 매립, 조경, 보도블럭공사 등을 완료한 후에 우수 또는 차량통행과 보행 등에 의하여 토사가 도로나 보도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

- ⑧ 도로신설공사 또는 공사장 출입을 위하여 비포장 도로를 통행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살수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 ⑨ 공사규모가 “①의 ⑦”보다 적은 규모일 경우의 세륜세차 시설 설치는 “3. 수송의 (3)의 ① 및 ② ②”의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⑩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3. 수송의 1)의 (1)”기준에 준할것.
- ⑪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또는 기타 비산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장치, 기계, 기구 등은 외관상 혐오감을 주지 않는 색채나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등의 설치는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을”지역

- ①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세륜세차를 위하여 “3. 수송의 (3)의 ① 및 ②”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② 세륜세차수, 살수한 물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하수 처리를 위한 적절한 간이 시설을 설치 운영 할것.
- ③ 기타 공사장내의 비산분진 방지를 위하여 “(1)의 ② - ⑪”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간이 시설이나 조치를 취할 것.

(3) “병”지역

- ① “을”지역의 시설관리 기준에 따르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간이 시설이나 조치를 취할것.

비산분진 발생원 설치 신고서

① 발 생 원 명 :

② 소 재 지 :

③ 관 리 자 :

④ 전 화 번 호 :

⑤ 설치시기 (공사기간) :

⑥ 지 역 구 분 :

⑦ 발 생 원			⑧ 방 지 시 설 (조치내용)			⑨ 비 고
시설명	규격(용량)	수 량	시설명(조치내용)	규격(용량)	수 량	

\* 작성요령

- ① 비산분진 발생원의 공식 명칭을 기재한다.
- ② 비산분진 발생원의 소재지를 번지까지 기재한다.
- ③ 비산분진 발생원을 설치 운영하는 법적책임자를 기재하고 현장관리자는 ( )에 기재한다.
- ④ 소재지의 전화번호 기입
- ⑤ 설치시기 (공사기간)는 설치운영시기를 기재하고 기준시설은 최초설치 시기를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기간을 기재한다.
- ⑥ 지역구분란에는 갑, 을, 병지역을 기재
- ⑦ 발생원에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공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공사장의 경우는 공사 종류(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따라 공사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 ⑧ 방지시설의 설치내역 또는 비산분진 방지를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계도면을 첨부한다.
- ⑨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 ⑩ 해당란에 기재 할 수 없는 사항은 별지에 작성 첨부한다.